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005-0373370
신청일	2020-05-15 15:18:14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진보네트워크센터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공개민원 및 질의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자 등 이상체온 출입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시간 및 이상체온 등이 기록되고 추후 동선 확인을 위한 자료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성동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얼굴인식 체온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5,44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 그러나 얼굴인식정보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생체인식 개인정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얼굴인식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논란이 많은 실시간 얼굴대조의 경우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스웨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학교에서 얼굴인식장치 사용을 금지하였고, 올해 2월 프랑스 법원은 학교 앞 얼굴인식장치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하게 규제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이미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

보에 대한 침해를 일정 부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필수적이지 않은 얼굴인식 정보 등 생체인식 정보의 활용 및 수집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성동구가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민의 정보인권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였는지 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공개 민원을 접수합니다.

(1) 성동구 청사 카메라는 “얼굴인식과 체온 측정을 한 번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체온 측정과 개인정보인 얼굴인식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하게 다르기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1) 체온 측정을 하면서 얼굴인식을 반드시 함께 실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1-2) 얼굴 정보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카메라 등 일반 촬영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사람을 영구적으로 식별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얼굴인식정보 형태로서 수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 해당 얼굴인식 카메라의 얼굴인식 기능이 단순히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유무만을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칩니까? 아니면 추후 이용을 위해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습니까?

(3) 성동구청이 계약한 얼굴인식 카메라 업체의 매뉴얼 등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외부 얼굴인식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 직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추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4)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출입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까?

(5)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얼굴인식정보와 함께 어떤 항목들을 기록하고 보관합니까? 이 정보들에 대한 보관 및 삭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6)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보관할 때 업체 등 구청외에 이를 공유하거나 제공합니까? 얼굴인식 업체와 계약한 내용 및 해당 카메라/시스템 운용지침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2020.05.15 진보네트워크센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5-0328232

접수일
2020-05-15 15:20:15

담당자(연락처)
홍성준(02-2286-5107)

처리예정일
2020-05-25 18:00:00

답변 내용

통지일
2020-05-25 14:46:39

처리결과 (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답변일자] : 2020-05-25 14:46:39
[작성자] : 홍성준 [전화번호] : 02-2286-5107 [이메일] : qkzhxm@sd.go.kr
[답변내용]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AI안면인식체온측정카메라에 대한 민원 및 질의를 하여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민원 및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 체온 측정을 하면서 얼굴인식을 반드시 함께 실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AI안면인식체온측정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인식 범위에 얼굴이 아닌 손, 머리와 같은 다른 신체의 경우 체온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사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체온측정을 합니다.
체온측정 시 얼굴부분(마스크 착용가능)을 카메라 측정 범위에 인식하여야만 체온측정을 하기 때문에 안면인식이 필수입니다.

(1-2) 얼굴 정보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카메라 등 일반 촬영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사람을 영구적으로 식별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얼굴인식정보 형태로서 수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해당 카메라가 측정 시 저장하는 사진의 경우 일반 카메라 수준의 사진이며, 위 답변과 같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식별할 수 없고
김○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은 결합가능한 얼굴인식정보 형태로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해당 얼굴인식 카메라의 얼굴인식 기능이 단순히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유무만을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칩니까? 아니면 추후 이용을 위해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변) 얼굴인식기능은 단순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유무만을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결합가능한 얼굴인식정보 형태로 수집 및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성동구청이 계약한 얼굴인식 카메라 업체의 매뉴얼 등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외부 얼굴인식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 직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추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외부 얼굴인식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관리할 수 있으나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청직원이나 다른 집단의 정보 입력이 없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출입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제15조 제외 사유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이태원 클럽과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5)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얼굴인식정보와 함께 어떤 항목들을 기록하고 보관합니까? 이 정보들에 대한 보관 및 삭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전체 얼굴인식정보는 기록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제한된 사진, 날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0명 방문 이후 기록은 순서대로 자동 삭제되고 있습니다.

(6)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보관할 때 업체 등 구청외에 이를 공유하거나 제공합니까? 얼굴인식 업체와 계약한 내용 및 해당 카메라/시스템 운용지침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답변) 걱정하신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사진정보 등을 구청 외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 납품 계약 외 개인정보와 관리 등에 대한 업체와의 계약은 없으며, 업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용지침은 현재 설명서를 참고하여 카메라를 운영중이며, 개인정보를 타 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02-2286-5107) 담당 홍성준/서설관리팀장 이범진/ 과장 엄원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쇄